

---

[ 파 주 문 산 읍 동 물 보 호 센 터 일 반 설 계 공 모 ]  
질 의 답 변 서

---

2025. 09.

파 주 시 청  
[ 공 공 건 축 과 ]

※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공모 규정 또는 지침에 대한 추가 또는 수정으로 간주됩니다.

구분	질의사항	답변	비고
1	-옹벽에 대한 높이, 길이 등의 제한 사항이 있는지?	- 별도의 옹벽에 대한 높이, 길이 등의 제한은 없습니다.	
2	-옹벽의 종류(콘크리트L형,보강토,식생 옹벽등)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는지?	- 별도의 옹벽에 종류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3	-제안서 폰트 종류 및 크기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 폰트 및 크기 제한 없음, 단, 폰트의 경우 사용시 저작권 등에 문제가 없는 폰트에 한하여 사용 가능	
4	-배치계획을 2차원 도면형식으로 표현해야 하는지? 3차원 이미지형식으로 표현 가능한지? -3차원이미지로 표현할 때에도 방위표기를 해야 하는지? -3차원이미지의 경우 건축물(매스)외의 조경,도로,차량,시설물,사람 등의 표현방식에 대한 제한이 있는지?	- 지침서 p.6 '3.2 공모안의 작성'내용에 따라 작성하며, 지침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참가자가 자유롭게 작성 가능	
5	-'반려동물행복누리'에 대한 계획이나 자료 등의 제공이 가능한지?	- 기 제공한 '반려동물행복누리' 계획도(11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구체적인 숲속 캠핑장, 반려동물 테마놀이터, 반려동물여가시설 계획은 현재 미정임	
6	-'공공건축물, 주변환경을 고려한 매스계획'에서 '공공건축물'은 금회설계공모 건축물을 지칭하는지? -인근에 고려해야 할 공공건축물이 별도로 있는지?	- 공공건축물은 '동물보호센터'를 의미함 - 인근 현재 고려해야할 공공건축물 별도 없음	
7	-'숲속캠핑장', '반려동물테마놀이터', '반려동물여가시설'의 진입로 계획이 있는지? 금회 설계공모에서 제안해야 하는지?	- 금회 설계 공모는 동물보호센터의 진입로를 계획하여야 하며 '반려동물행복누리'와의 연결 및 연계를 고려해서 설계하여야 함	
8	-'반려동물테마놀이터'와 '반려동물여가시설'의 차이가 무엇인지? -'반려동물테마놀이터'와 '반려동물여가시설'은 옥외공간인지? 건축물 계획이 있는지?	- 반려동물 여가시설은 반려동물 산책로이며 테마놀이터는 반려견 어질리티(Agility)시설이 있는 반려견놀이터임 - 옥외공간임, 구체적인 건축물 계획은 미정임.	
9	-6m 도로로 변경 예정이라 하는데 계획도로선이 있는지? 관련 도면 제공 가능한지? -금회 설계공모부지에 편입을 고려해야 하는지?	- 현재 계획도로선은 없음 - 금회 설계공모부지에 6m도로를 확보할 필요는 없음	

구분	질의사항	답변	비고
10	- '방문자 센터'와 '외부 반려견 놀이터'는 모두 금회 설계공모 부지 내에 증축되는지? - '방문자센터'는 별도증축이 아닌 금회설계공모건축물에 증축해도 가능한지?	- 부지에 증축될 예정으로 배치계획에 영역 제안 - 별도 증축임	
11	- '묘사'의 '단독케이지'에 대한 규격이 있는지? - '묘사'의 '단독케이지'는 묘사 규모 20마리에 따라 20개가 필요한지? - '견사'에는 '단독케이지'를 계획하지 않아도 되는지?	- 참고자료로 제공한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가이드라인」(‘22년, 농림축산식품부’)참고 - 20개 필요 - 견사 보호두수 규모를 참고하여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가이드라인」(‘22년, 농림축산식품부’)에 맞는 보호장 및 단독케이지 계획 필요함	
12	- '진료실/TNR치료실'에 필요한 장비,설비,규격 등의 기준,자료가 있는지? - '미용및세탁실'에 필요한 장비,설비,규격 등의 기준,자료가 있는지?	- 참고자료로 제공한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가이드라인」(‘22년, 농림축산식품부’)참고	
13	- '동물보호센터 전용 놀이터'에 대한 최소 면적, 프로그램(훈련, 휴식, 격리 등)의 기준이 있는지? 없다면 제시해야하는지?	- 참고자료로 제공한 「동물보호센터 시설설계 가이드라인」(‘22년, 농림축산식품부’)참고하여 설계하며 별도 기준은 없음	
14	- '방문자 센터'와 '외부 반려견 놀이터'의 구체적인 위치, 규모, 매스 형태 등이 배치도 등에 표현되어야 하는지? 단순히 영역 지정 등으로 표현하면 되는지?	- 배치도에 영역 지정으로 표현하면 됨	
15	- 지반, 지적, 필지, 가분할선 등이 기재된 도면의 제공이 가능한지?	- 참고자료로 제공한 현황측량도, 수치지형도 참조	
16	- 주차 대수의 상한선이 있는지? 증축시 추가 확보를 고려해야 하는지? - 주차장에 대한 별도의 지침이 있는지?(옥외 설치,지하주차장 등)	- 주차대수 상한은 없으나 대상지의 입지 상 가능한 추가확보하면 이 용에 편리할 것으로 예상됨 - 옥외주차장, 필로티주차장, 지하주차장 등 제한 없으나 주어진 공사비 내에서 가능한 주차계획 필요(현재 공사비에 필로티와 지하주차장건축비는 미포함)	
17	- 제안서에 입면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 포함해야 한다면 표현의 수준(개구부,재료 등)은 어느정도인지?	- 1단계 공모에서는 평·입·단에 대한 계획개념도를 작성하며, 표현 수준은 참가자 임의로 작성 가능하나 계획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수준으로만 작성하며 세부적인 도면은 작성하지 않음 (개구부 표현 시, 투명도 및 창틀 등의 세부 표현은 하지 않음)	

구분	질의사항	답변	비고
18	-추후 2단계 설계공모 작성 시, 1단계 설계공모에서 제안한 계획 개념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수정, 조정할 수 있는지?	- 1단계 제안의 개념을 유지하여 발전된 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1단계의 계획개념이 유지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19	"3.1 작품접수" 내 "(2)고유번호 기재방법"에 파일명은 "고유번호_Proposal.pdf"로 되어 있고" [붙임 1] 내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도서 및 서류목록"에 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서와 설계설명서를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유번호_Proposal.pdf"가 설계설명서의 파일 명이면 제출서 및 압축파일의 파일 명도 지정된 파일명이 있는지 확인 바랍니다.	- 고유번호 기재하여 제출 ※ 예시) 고유번호_제출서', '고유번호_압축파일'	
20	[서식12]사전접촉여부확인서도 제출도서에 들어가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 사전접촉 여부에 대한 확인은 '[서식 6] 사전접촉 금지서약서'로 갈음하며 [서식12]는 제출하지 않음. - 사전접촉은 제3자를 통한 접촉 또는 접촉을 시도한 경우까지 포함	
21	"(3)추후 증축 예정(계획 시 고려)" 내 증축예정 시설인 방문자 센터와 외부 반려견 놀이터는 동물보호센터 부지에 계획되어야 하는지와 방문자 센터는 복층으로 계획도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동물보호센터 부지 내이며 방문자센터와 외부 반려견 놀이터는 배치계획에 영역 제안만 하면 되며 방문자센터는 별도로 계획 예정(현재 미정)	
22	"(2) 시설규모 기준" 내 주차장 면적이 없습니다. 즉 지하주차장이나 필로티 하부 주차장이 아닌 반드시 외부 주차장으로 계획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옥외주차장, 필로티주차장, 지하주차장 등 제한 없으나 주어진 공사비 내에서 가능한 주차계획 필요(현재 공사비에 필로티와 지하주차장건축비는 미포함)	
23	1.2공모(사업)개요 내 주차장 항목에 "계획 20대 이상(최대확보)"로 되어 있는데, 주변 반려동물 여가시설 부지 또는 테마놀이터 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계획도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동물보호센터 부지내 20대이상 확보(다른 부지 활용 금지)	
24	(2)번 항목 내에 "설계설명서에 제공되는 서식에 따라 추정 예상공사비 개략내역서를 작성하여야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서식이 없으며 6페이지 "3.2공모안의 작성" 항목에 추정 공사비 내용이 없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 2단계에서 추정공사비 내용 서식이 제공될 예정(1단계에서 필요 없음)	
25	"배치 계획" 항목 내 중점평가사항에 언급된 "반려동물행복누리"의 개략적인 용도와 규모 및 대지위치(예를 들면 동물보호센터 부지 내 위치 등)에 대한 정보와 "방문자센터(증축예정)"의 대지위치(예를 들면 동물보호센터 부지 내 위치 등)가 제공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기 제공한 '반려동물행복누리' 계획도(11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구체적인 숲속 캠핑장, 반려동물 테마놀이터, 반려동물여가시설 계획은 현재 미정임 - 반려동물 여가시설은 반려동물 산책로이며 반려동물 테마놀이터는 반려견 어질리티(Agility)시설이 있는 반려견놀이터임 - 방문자센터는 동물보호센터 부지 내 배치계획에 영역 제안만 하면 되며 방문자센터는 별도로 계획 예정(현재 미정)	

구분	질의사항	답변	비고
26	"2.4 2단계 설계공모 참가자격" 내 "(2).....1단계 참가자 중 2단계 미 선정자는 2단계 심사 진출자와 공동응모로 참가 가능" 으로 되어 있어 1단계에서 단독으로 응모한 사람만 2단계에서 1단계 참가자와 공동응모로도 진행이 가능 하다는 의미인지 확인 바랍니다.	- '2.4. 2단계 설계공모 참가자격(2)' 항목 삭제함(지침 수정) - 공동응모 가능하나 1단계 참여자와 2단계 참여자가 동일하게 구성되어야 함 (2단계 설계공모시 구성원 추가 등 구성원 변경 불가)	
27	진입도로 계획시 완만한 경사도 확보 또는 향후 시설들의 진입 통일성을 위해 추후 계획될 '반려동물 테마놀이터(북측 농로포함)'와 '반려동물 여가시설' 사이트를 일부 거쳐서 '동물보호센터' 사이트로 진입해도 되는지 여부. (동일 입구를 사용하게 된다면 진입 도로는 공유하면 컨디션이 좋아 진다는 의견입니다.) 만일 가능하다면 '반려동물 여가시설' 경계도 제공 부탁드립니다.	- 동물보호센터 대지로 차량이 직접진입할수 있어야 하며 향후 '반려동물행복누리'계획에 따른 확장을 고려하여 연결성을 계획하여야 함.	
28	프로그램을 대략 애견카페, 반려견 테마파크, 펫 리조트, 반려동물 동반 공원 등의 범위에서 예측하고, 이용자는 동물보호센터와는 다르다고 가정하고 계획하는게 맞는지 질의 합니다.	- 동물보호센터는 유기견·유기묘 들의 치료·보호·분양,외부자원봉사자 방문 및 각종 동물보호관련 행사·교육 등이 목적이며 추후 계획 중인 반려동물 놀이터, 캠핑장은 반려동물을 동반한 놀이·레저시설임	
29	본 공모는 추후 사업등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요구하고 있는 바 반려동물행복누리 계획도상의 3d 자료 범위로 넓혀 제공 가능한가요?(산 122임 등고표현된 자료)	- 현 공모에서 '반려동물행복누리'의 마스터 플랜을 요구하고 있는게 아님. 향후 연계와 연결성을 고려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계하라는 뜻임.	
30	예정설계비에 포함된 토목공사비에 개발행위부담금도 포함된건가요?	- 개발행위부담금은 포함되지 않음	
31	1단계는 사전기술검토 시행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심사 전 제출해야 하는 지침 위반 검토결과 작성 서식은 별도로 있나요?	- 1단계 평가 시에는 제안자의 계획개념을 위주로 평가할 예정이므로 기술검토는 생략하며, 지침위반(제출물 작성기준 등)은 공모관리기관에서 확인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	
32	렌더링 하지 않은 매스계획 수준의 3차원 이미지는 컬러사용 가능한가요?	- 지침서 p.6 (2)작성방법 •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개구부 및 마감재질 등을 표현하지 않은 매스계획 수준만 허용), 각종 개념도, 다이어그램 등 모든 내용에 컬러 사용에 제한은 없다.	
33	(1)해당 외부 반려견 놀이터는 대지면적 4,860m2 내에서 추후 증축되는 시설 인건지? 혹은 지침서 p11.반려동물행복누리 계획도에 명시되어있는 '반려동물 테마놀이터'를 의미하는 건지? (2)방문자센터 또한 대지면적 4,860m2내에 증축예정인게 맞는지?	- 외부 반려견 놀이터는 동물보호센터내 증축되는 시설임 - 맞음	
34	지침서상 대지면적은 4,860m2이고, 제공된 현황측량도 상 대지면적은 4959.2435m2로 약 100m2가량 차이가 발생. 기준 통합 필요.(만약 4,860m2가 맞을 시, 4,860m2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는 캐드파일 제공 요청)	- 현황측량도에 동측 아스팔트 포장되어 있는 현황도로 면적이 100㎡임(도로부지) 대지면적에서 현황도로 면적은 제외.(제외후 면적:4,860㎡)	

구분	질의사항	답변	비고
35	(1)'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개구부 및 마감재질 등을 표현하지 않은 매스계획 수준만 허용)'라고 적혀있는 바, 이는 계획하는 본 매스에만 해당된다고 보면 되는지? 예를들어 주변대지(아스팔트도로, 초록색 농지, 주변건물 등)는 재료 맵핑이 들어가도 되는지?	-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는 모든 재질 적용 불가 (대지 주변 및 조경 표현 등 전체 재질 적용 불가)	
36	(2)각종 개념도 및 다이어그램에도 일절의 맵핑이 허용되지 않는지?	- 중복, 질의 35번 항목 참조	
37	지침서 상 '반려동물행복누리 계획도'에 표시된 'A.반려동물 여가시설, B.반려동물 테마놀이터, C.숲속캠핑장'은 지침서 p12~20에 설명되어 있는 '건사와 직접 출입이 가능한 놀이터 공간' 등과는 별개의 사업인게 맞는지? 예로 대상지 남측으로 추후 '반려동물 테마놀이터'가 계획될 예정이고, 금회 사업에선 4,860m2 내에 '건사와 직접 출입이 가능한 놀이터 공간'을 조성하는게 맞는지?	- 지침서 상 '반려동물행복누리 계획도'에 표시된 'A.반려동물 여가시설, B.반려동물 테마놀이터, C.숲속캠핑장'은 지침서 p12~20에 설명되어 있는 '건사와 직접 출입이 가능한 놀이터 공간' 등과는 별개의 사업임. - 금회 사업에선 4,860m2 내에 '건사와 직접 출입이 가능한 놀이터 공간'을 조성하는게 맞음.	
38	제공된 현황측량도 기준으로 현재 대상지 북측은 '3m비포장 농로'이고, 대상지 동측은 4~6m 도로임. 지침서에 적힌 '북측 4m 도로'는 현황측량도 상 '3m 농로'를 의미하는게 맞는지? 또한 6m도로로 변경 예정이라는건 3m 농로를 6m 도로(지목상 도로)로 변경할 예정인건지?	- '북측 4미터도로'는 북측에 접해있는 '3m 비포장 농로'를 말하는게 아닌 1.7. 주변현황 2번사진에 보이는 북쪽방향(㈜호박피앤비 공장 쪽)의 자유로 내포IC쪽 진출입하는 도로를 말하는 것임. - '6미터 도로로 변경'도 '3m비포장 농로'를 말하는게 아닌 북쪽방향(㈜호박피앤비 공장쪽)의 자유로 내포IC쪽 방향 진출입하는 도로를 말하는 것임.	
39	동측 4~6m 현황도로는 보행 및 차량을 위한 대지 진출입로로 사용불가 한건지?	- 사용가능함	
40	대지경계는 지형도면고시도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현황측량도 외에 지형도면고시도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 또한 지형도면고시도는 '반려동물행복누리 계획도' 상의 '숲속캠핑장' 영역까지 포함된 도면이 맞는지?	- 현황측량도에 대지경계 표시되어 있음(별도 추가도면 없음) - 기 제공한 '반려동물행복누리' 계획도(11페이지)는 현재 관보 등에 지형도면 고시된 계획이 아님.	
41	동일 페이지 지침서의 도면상에는 동측에 현황도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 도로는 주 진입 접근이 불가능한지? 주 접근로는 반드시 북측도로가 되어야 하는지? 이는 차량 출입도 동일한지?	- 접근 가능함. 현재 대상지로의 접근로는 1.7. 주변현황 2번사진에 보이는 북쪽방향(㈜호박피앤비 공장쪽)의 자유로 내포IC쪽 진출입하는 도로임. - 남측방향의 도로를 주접근로로 하여도 되나 북쪽방향(㈜호박피앤비 공장쪽)도로가 자유로나 금촌지역에서 접근이 쉬움.	
42	설계설명서에 삽입할 수 있는 평, 입, 단면의 개수는 제한이 없는지?	- 개수에 제한은 없음.	

구분	질의사항	답변	비고
43	단선표현은 평, 입, 단면 모두에 해당되는 것인지? 단선으로만 표현한다면 선 두께는 자유롭게 해도 되는지? 창,문과 같은 개구부의 표현도 지양하는지? (예시이미지가있다면제시부탁드립니다)	- 1단계 공모 시, 참가자의 계획개념(아이디어)를 평가하고자하며, 평입단 계획개념도 모두 단선으로 선 두께 조절만 가능 - 개구부 표현시 창틀 및 세부적인 표현은 지양	
44	현재 현황도로가 지목상 도로가 아닌데,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 국유지(구거)의 현황도로로 진입가능함.	
45	동물보호센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개략의 계획안이 존재한다면 공유 가능한지? 아직 계획 전인지? 1.1(1)의 내용처럼 동물보호센터가 단지의 시작이나, 전체 마스터플랜에 대한 계획방향이 존재하는지?	- 지침의 '반려동물행복누리' 계획도(11페이지)를 참고 바라며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미정임. - 동물동물보호센터 건립 이후 추후 반려동물행복누리의 시설들이 잘 연계·연결될 수 있어야 함.	
46	예정 설계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 각종 예비인증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규모 자체는 작으나, 현재 개발하고 있는 단지 전체의 계획(캠핑장,여가시설,테마놀이터등)은 면적이 상당하여 토목관련 각종평가(ex재해영향평가등)가 수반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각종영향평가등도 설계비에 포함되는 것인지?	- '동물보호센터 건립'만 설계 용역 범위이며 주변시설(반려동물행복누리)계획도를 참고하여 설계(주변까지 포함하여 마스터플랜을 하는게 용역의 범위가 아님)	
47	설계비 항목에 부지조성 토목설계비라 함은 현재 "임야" 를 "대지" 로 변경하는 개발행위 허가관련 비용(형질 변경 및 지목 변경 에 따른 토목 업체 비용)까지 의미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 토목 도면 작성을 위한 비용만 포함이고, 개발 행위허가(산지전용 등)는 별도 용역인 것인지?	-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 의제)를 득하여야 하며 모두 용역 범위에 포함됨(별도 용역 아님)	